

조 정 조 서

사 건 [REDACTED] 손해배상(기)

원 고 [REDACTED]

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조정장 판사 [REDACTED]

기 일 [REDACTED]

조 정 위 원 [REDACTED]

장 소 : 319호 조정실

공개 여부 : 공 개

원고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출석

피고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을 지급하되, 위 돈은 피고가 소외 [REDACTED] 원고의 배우자, [REDACTED] [REDACTED] 지급한 20,000,000원으로 갈음한다.
2. 피고는 제1항 기재 돈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임을 확인하고, 위 금원지급을 이유로 소외 [REDACTED]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.
3. 원고는 즉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[REDACTED]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한다.

4. 피고는 소외 ■■■■■와 만나거나 전화, 문자메세지, 전자우편, SNS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접촉해서는 아니된다.

만일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,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,000원씩을 지급한다.

5.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.

6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